

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3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 개정을 반영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일부개정함으로써 시민상 권위를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성평등상 시상 시기를 변경함 (안 제4조)
- 나. 수상후보자 추천 절차를 강화함 (안 제5조)
- 다. 수상자 결정 후 시 누리집에 공개함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- 다. 기타
 - (1) 입법예고 (2022. 8. 11. ~ 8. 31.) 결과: 의견없음
 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6. 서울특별시성평등상 : 양성평등주간(9월 1일~9월 7일)

제5조제2항 중 “다음 각호의 인원이”를 “30인 이상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,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누리집(홈페이지)에 제 1항에 따라 결정된 수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상 방법 및 시기) ① 시상은 시상종류별로 연1회 실시하되,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<u>서울특별시성평등상 : 여성주간(7월 1일~7월 7일)</u></p> <p>7. ~ 10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조(수상후보자 추천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<u>다음 각호의 인원이</u> 연서로 하여야 한다.</p> <p>1. <u>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 : 30인 이상</u></p> <p>2. <u>그 밖의 시상종류 : 10인 이상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6조(시상대상자 결정) ①·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시상 방법 및 시기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서울특별시성평등상 : 양성평등주간(9월 1일~9월 7일)</u></p> <p>7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수상후보자 추천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30인 이상</u> ----- -----.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시상대상자 결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누리집(홈페이지)에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수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- 행정국 자치행정과 김예원(2133-5826)